

접대비성 지출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위 준 복* 김 문 태** / 이 선 화***

〈 국문초록 〉

우리나라의 접대비는 성격과 개념, 세제상 규정, 사회적 인식수준 등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논란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접대비는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perquisites consumptions)의 대표적인 측정치로써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된 국가나 기업, 재무보고 공시가 비노출적인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이익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바, 접대비가 만연된 기업환경은 이익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행태로 인식되고 있는 접대비성 지출과 회계투명성의 대표적 측정치인 이익관리의 설명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 코스피(KOSPI)에 등록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익관리의 대용변수는 수정 Jones 모형으로 추정한 재량적발생액을 활용하고, 접대비성 지출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지출의 합산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재량적발생액과 접대비성 지출 및 접대비성 지출의 증감은 밀접한 양(+)의 설명관계로 나타나 특권적 소비로 대표되는 접대비성 지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기 대비 접대비가 증가정도가 강할수록 이익의 상향조정을 위한 회계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를 반영한 재량적발생액(Kothari et al. 2005), 복리후생비를 배제한 접대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해석의 강건성을 기할 수 있었다. 추가 분석에서, 접대비실명제가 시행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접대비성 지출에 대한 이익관리 정도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접대비실명제가 폐지된 이후 증가된 접대비성 지출로 인하여 기업의 이익조정 정도가 더 강하게 구사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접대비성 지출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관리를 직접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성이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접대비, 특권적 소비, 이익관리, 재량적발생액, 접대비실명제

*전남대학교 교수

**조선대학교 부교수

***전남대학교 초빙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성 지출과 이익관리의 설명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¹⁾.

대리이론의 관점에서, Jensen and Murphy(1990)에 의하면, 금전적으로 부여받는 직접적 보상은 시장에서의 묵시적 규제(implicit regulation)가 강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감시와 관심에 덜 노출된 특권적 소비(perquisites consumptions)를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회계계정이 접대비로 인식되어 왔다. 즉 접대비는 간접보상의 형태로써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측정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접대비는 다른 나라(특히 선진국)에 비하여 성격과 개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를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특징이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현행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교제비, 사례금 등 접대비로 분류된 항목의 지출금액 일부를 비용(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접대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접대비에 대한 업무관련성 범위, 지출금액의 제한성, 증빙성 등에서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과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²⁾. 접대비에 대한 관대한 규제와 사회적 인식에 편승하여, 2014년 기준 국내 기업들이 지출한 금액은 9조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접대비실명제 시기에 다소 둔화되었던 접대비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기업의 접대행위가 과도할 경우 유흥산업을 통한 과소비와 지하경제가 팽창하고, 그 결과 생산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공정거래의 저해 사회적 도덕수준의 저하, 성매매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손원익 2013). 따라서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접대비 손금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접대비를 다른 계

1) 본 연구에서 이익관리와 이익조정은 동일한 개념으로, 문맥에 따라 혼용하여 기술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익관리는 이익의 상향조정을 가정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는 원문에 따라 기술하였다.

2) 미국은 기업이 거래 상대방이나 자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entertainment expenditures, gift 등을 비용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접대비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조차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지출에 대한 증빙기록이 없으면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접대비를 교제비로 지칭하는 일본은 원칙적으로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중소기업에 한해 허용할 뿐이다. 영국은 접대비가 지출되면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해 세제 혜택이 없고, 독일은 사업·영업상의 목적에 한정하여 접대비성 경비의 7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손원익(2003), 안중석과 조찬래(2006) 참조.

정과목으로 처리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된다(최수미 2003; 손원익 2013 재인용).

접대비 한도의 상향조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접대비를 영업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그러나 접대비에 대한 세법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에 규정을 판단하는 모호성,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의 미비, 정상적인 정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접대비는 접근성과 통제성이 용이한 특정인(또는 특정계층)의 전유물으로써 기회주의적인 특권적 소비행태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외부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장치가 부실한 경우, 내부자(insiders)⁴⁾에 의한 기업의 통제권한이 강화되어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Lins 2003; Leuz et al. 2003; Gopalan and Jayaraman 2012). 즉 경영자의 특권적 사적소비가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때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 장치가 발달된 국가나 기업에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이 통제된다는 선행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La Porta et al. 1999; Reese and Weisbach 2002; 최승호·최우종 2010). 또한 경영자는 특권적 소비행태가 드러남으로써 대두될 수 있는 위험부담, 감시압박, 비판적 시선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감출 유인을 가질 수 있다(Zingales 1994; Shleifer and Vishny 1997). 이는 재무정보의 완전공시 측면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반혜정·박경원 2012).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접대비성 지출이 투자자 보호 및 재무통제 장치의 건실성과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비노출성 성격으로 은폐되어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이익관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Lins 2003 : Leuz et al. 2003 : Leuz et al. 2003 : Gopalan and Jayaraman 2012),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접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환경이 이익관리에도 작용될 수 있다는 연계적 추론에 의하여, 접대비와 이익관리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접대비성 지출과 이익관리가 밀접한 설명관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접대비실명제에 대한 시사적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접대비와 관련된 회계투명성, 도덕적 해이,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입안의 논리적 단서를 제시하

3)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1백 81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6.0%는 접대비가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68.0%는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프레이안 2003.06.16. 보도자료 참고).

4) 내부자란 기업 내부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상황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최대주주, 기업총수로서 최고경영자,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및 가족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는데 공헌할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의 설정

특권적 소비행태는 내부자(최고경영진)가 자신의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재량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지출로써 접대비 관련 지출이 대표적인 대용변수로 측정되었으며, 국내외 선행연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와 제도적 장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Morck and Nakamura(1999)는 감시활동이 증가하면 접대비에 대한 지출이 감소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Yafeh and Yosha(2003)는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사적소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박수진·이지환(2008)에서도 대주주지분율이 높고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수록 접대비성 지출로 측정된 경영진의 간접보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는 대주주에 의한 소유권과 기업총수에 의한 통제권이 분리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한 국내기업 환경에서는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 연구결과에 앞서 김병호(2001)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은 기업총수 1인에 의하여 거의 모든 통제 및 소유권한이 집중되어 대주주와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을지라도, 기업총수가 재량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부(富)를 자신의 부로 이전시키는 또 다른 차원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즉 국내기업 대부분은 대주주인 동시에 최고경영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Claessens et al. 2000; Johnson et al. 2000; 박종일 2003).

Leuz et al.(2003)은 특권적 소비권한을 행사할 내부자의 동기와 회계보고 관행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내부통제 장치와 투자자 보호정책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영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자신의 보상이나 특권적 소비를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기업의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때, 내부자는 전형적으로 가족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 나타나며, 심지어 지분이 낮을지라도 비합리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opalan and Jayaraman(2012)은 주요 22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자 지배기업(insider controlled firms)에서 이익조정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는 투자자 보호정책이 취약한 국가에서 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Lins(2003)는 외부주주와 시장에서의 무관심과 방관 등 소극적 견제환경에서 특권적 소비행태가 강하게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저하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당지급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n et al.(2015)은 경영자의 과도한 특권적 소비는

기업가치를 저해하지만, 최고경영자에게 금전적 수단으로 퇴직금과 보너스 등으로 보상을 부여하거나 통제권한의 제한과 적절한 감시체계의 구축으로 금전적 기만행위(financial fraud)와 회계조작(accounting manipulation)에 의한 악용(exploitation)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 입장에서 볼 때, 주주 대부분이 소액주주로 분산되어 경영의 사결정에 소극적 입장을 취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단기매매 위주의 투자성향을 갖게 되어 현실적으로 경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거나 통제할 의지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장하성·박경서 2001). 심지어 조성빈(2006)은 사외이사의 증가가 오히려 접대비 비중을 증대시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종일(2008)과 김문태·박길영(2009)은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의 활동성, 감시위원회의 활동성,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가의 포함여부가 기업의 접대비 지출수준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헌준 등(2004)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많은 기업일수록 접대비의 지출비중을 통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업특성과 접대비와 관련성에 대하여, 장상록·김강호(2010)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우호적인 금융환경과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비율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접대비가 경영자가 개인적 효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량적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접대비 지출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접대비가 대표적인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행태로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익관리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첫째, 접대비성 지출은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장치의 취약성과 내부자의 접대비 행사에 대한 강한 통제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환경에서는 이익조정 또한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La Porta et al. 1999; Leuz et al. 2003).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순환출자구조에 의한 기업집단체제에서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이 최고경영자를 위시한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인식되어 왔다(La Porta et al. 1999; 장하성과 박경서 2001; 홍수희와 김명서 2013)⁵⁾. 그러므로 접대비성 지출이 감시와 통제의 제약을 덜 받는 기업환경에서 동시에 이익관리가 보다 강하게 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접대비성 지출은 대부분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수단(예를 들어, 과도한 임원보상,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손원익 2002; 이태호

5) 2013년 10월에 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투자자 보호순위는 189개국 중 5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7위를 차지한 것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순위이다.

등 2005; 최원욱 등 2005; 손원익 2013). 이는 음성적이고 비노출적인 속성을 지닌 지출로써 재무보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Leuz et al. 2003). 반혜정·박경원(2012)은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관리 정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바, 접대비성 지출은 정상적인 회계계정을 통하여 공시된 재무보고의 최소치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이익관리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의 영향력에 처해있는 경영자는 접대비성 지출이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최수미 2003; 박헌준 등 2004; 최수미 2007; 김성환·김미나 2011)을 인지하고, 사전적으로 접대비성 지출로 유출된 기업의 부(富)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하기 위한 회계방법을 선택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Gopalan and Jayaraman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접대비 관련지출을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행태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이익관리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접대비성 지출수준과 접대비성 지출의 증가는 이익관리와 양(+)의 설명관계가 있다.

Ⅲ. 연구의 설계

3.1 이익조정 변수: 재량적발생의 추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익관리 대용변수는 식(1)의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에 의하여 연도별-산업별로 추정한 재량적발생액(DA, discretionary accruals)이다. 식(1)에서 α_1 과 α_2 는 이익조정이 상대적으로 통제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으며, 회귀식에서 추정된 계수를 각 개별기업에 대입하여 비재량적발생액(non-discretionary accruals)의 기대치를 산출하고, 이를 총발생액(TA)에서 차감하면 재량적발생액이 추출된다. 회귀분석에서의 추정과정을 거치면, 결과적으로 재량적발생액은 식(1)의 잔차항(ϵ)과 같게 된다.

$$\frac{TA_t}{A_{t-1}} = \alpha_0 \left(\frac{1}{A_{t-1}} \right) + \alpha_1 \left(\frac{\Delta REV_t - \Delta AR_t}{A_{t-1}} \right) + \alpha_2 \left(\frac{PPE_t}{A_{t-1}} \right) + \epsilon \quad \text{식(1)}$$

TA(total accrual): 총발생액=당기순이익(net income, NI)-현금흐름(cash flow, CFO)

ΔREV (change of revenue): 매출액의 변동=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ΔAR (change of accounting receivable): 매출채권의 변동=당기매출채권-전기매출채권

PPE(plant, property and equipment): 감가상각이 가능한 설비자산

ROA(return on asset): 당기순이익/총자산

A_{t-1} : 전년도 총자산,

*추정변수는 t시점을 가정하며, 편의상 임의의 기업 i에 대한 표시는 생략함.

3.2 가설검증 모형의 설계

$$DA = \beta_0 + \beta_1 PERK(\text{or } \Delta PERK) + \beta_2 SIZE + \beta_3 DEBT + \beta_4 BLOK + \beta_5 FOR + \beta_6 BIG4 + \beta_7 IFRS + \epsilon \quad \text{식(2)}$$

<종속변수>

DA: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추정된 재량적발생액,

<주설명변수>

PERK: 경영자의 사적소비=(접대비+복리후생비)/매출액,

$\Delta PERK$: 당기 PERK-전기 PERK

<통제변수>

SIZE: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

BLOK: 기말 최대주주지분율, FOR: 기말 외국인지분율,

BIG4: 대형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⁶⁾,

IFRS: K-IFRS 의무적용 연도(2011년, 2012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ϵ : 잔차항,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임의의 기업 i의 t시점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표기는 편의상 생략함.

식(2)에서 종속변수 DA는 이익관리의 대응변수로서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추정된 재량적발생액이다. 이에 대한 주설명변수 PERK(혹은 $\Delta PERK$)는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행태(혹은 변동)를 나타내며, 박헌준 등(2004)의 접대비에 기밀비를 배제하고 복리후생비를 추가하여 매출액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하였다⁷⁾. 복리후생비를 추가한 이유는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정 강화에 따라 비정상적 리베이트가 접대비에서 복리후생비로 위장분류 혹은 대체처리 될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오기수 2002; 고윤성·이진

6)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기간에 따라 외국계 대형회계감사법인과 제휴한 삼일, 안진(하나, 하나안진 포함), 삼정, 한영(안진, 안영, 영화 포함)을 대형회계법인으로 보았다.

7) 기밀비는 증빙처리가 불가능한 회계계정으로 2000년 이후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 기간에는 이를 활용할 수 없다. 다만, 현행 접대비 개념에 교제비, 사례비와 함께 기밀비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부금 지출 여부 및 지출금액의 재무공시가 기업별로 편차가 심하여 비교가능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제하였다.

원 2011). 가설의 논거에 따라, 접대비성 지출이 특권적 소비행태로써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장치의 취약성과 재무보고의 비노출적 속성과 밀접한 설명관계가 있을 것이며, 이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PERK와 Δ PERK는 DA에 양(+)의 설명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접대비성 지출이 종속변수인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이익관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DEBT), 대주주지분율(BLOK), 외국인지분율(FOR), 감사인 규모(BIG4) 등 이익관리에 관련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누락변수로 인한 오차를 줄이고 통계적 추론에 정확성을 기하였다(박종일 2003; 김문태 2004; 최성규·김경민 2005; 김성환·김태동 2013). 마지막으로, 2011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연도효과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⁸⁾.

3.3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 KOSPI에 등록된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연도 횡단면 표본을 선정하였다. 재무자료는 KIS-VALUE에서 입수하였으며,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제외하고, 12월 결산법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접대비를 산정할 수 없는 표본,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을 초과한 기업, 평균 $\pm(3 \times \text{표준편차})$ 를 초과한 극단치는 회계정보 신뢰성과 자본잠식으로 인한 해석의 동질성을 해칠 우려와 크다고 여겨지므로 제거하였다. 최종 검증표본은 6,663개이며,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선정

구성항목		기업-연도 표본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 상장법인(2004 ~ 2014)		6,813
제거	접대비 산정자료 누락 표본	14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22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을 초과한 표본	68
	극단치(outliers) : 평균 ± 3 표준편차 초과	76
최종표본		6,663

8)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재량적발생액이 연도별-산업별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연도 및 산업 더미변수를 별도 통제변수로 설계하지 않았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n=6,663)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1/4	3/4	최대값
DA	0.002	0.003	0.124	-0.711	-0.038	0.046	0.690
PERK	0.010	0.005	0.015	0.000	0.003	0.010	0.291
Δ PERK	0.000	0.000	0.010	-0.348	-0.001	0.001	0.268
SIZE	26.580	26.329	1.540	21.254	25.518	27.399	32.731
DEBT	0.440	0.445	0.203	0.001	0.285	0.586	0.993
BLOK	28.039	24.480	15.786	0.000	16.300	36.410	95.870
FOR	10.171	3.520	14.629	0.000	0.497	13.770	92.970
BIG4	0.692	1.000	0.462	0.000	0.000	1.000	1.000

<변수의 정의>

DA: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추정된 재량적발생액,

PERK: (접대비+복리후생비)/매출액, Δ PERK: 당기 PERK-전기 PERK,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총부채/자기자본, BLOK: 대주주지분율,

FOR: 기말 외국인지분율, BIG4: 대형감사법인 더미변수.

<표 2>는 연구에 활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⁹⁾. DA의 평균은 0.002로 약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연구대상 기간 동안 이익이 약하게 상향조정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PERK의 평균은 0.010으로 표본기업에서 매출액의 약 1%를 접대비성 지출로 소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Δ PERK의 평균은 거의 0에 근접하여 매출액 대비 접대비성 지출의 평준화 현상(smoothing)을 유추할 수 있다. SIZE의 평균은 26.580로 거래소 상장기업에서 추출된 표본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비중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DEBT의 평균은 0.440으로 자본잠식에 의한 이상치를 제거한 총자산 대비 부채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추론되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가 매우 커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FOR의 평균을 통하여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참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BIG의 평균으로 거래소 상장기업이 전반적으로 대형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9) IFRS 의무도입 시점인 2011년 이후 기술통계량은 오로지 연도에 의한 더미변수이므로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4.2 상관분석

〈표 3〉 상관분석표

	DA	PERK	SIZE	DEBT	BLOK	FOR	BIG4	IFRS
DA	1.000	0.071	-0.050	-0.048	-0.002	-0.028	-0.025	-0.040
		0.000	0.000	0.000	0.901	0.032	0.055	0.001
Δ PERK	0.068	1.000	0.000	0.000	-0.003	-0.002	-0.010	0.022
	0.000		0.983	0.985	0.817	0.854	0.429	0.075
SIZE	-0.070	-0.215	1.000	0.151	0.000	0.409	0.383	0.101
	0.000	0.000		0.000	0.978	0.000	0.000	0.000
DEBT	-0.052	-0.139	0.147	1.000	0.001	-0.152	0.023	-0.031
	0.000	0.000	0.000		0.933	0.000	0.074	0.011
BLOK	0.002	-0.056	-0.023	-0.008	1.000	0.021	0.090	0.062
	0.884	0.000	0.056	0.527		0.102	0.000	0.000
FOR	-0.043	-0.027	0.461	-0.154	0.005	1.000	0.238	-0.019
	0.000	0.029	0.000	0.000	0.687		0.000	0.130
BIG4	-0.037	-0.047	0.399	0.024	0.086	0.250	1.000	0.015
	0.003	0.000	0.000	0.048	0.000	0.000		0.236
IFRS	-0.043	-0.014	0.087	-0.021	0.078	-0.063	-0.006	1.000
	0.001	0.288	0.000	0.099	0.000	0.000	0.638	

〈변수의 정의〉

DA: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추정된 재량적발생액,

PERK: (접대비+복리후생비)/매출액, Δ PERK: 당기 PERK-전기 PERK,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총부채/자기자본, BLOK: 대주주지분율,

FOR: 기말 외국인지분율, BIG4: 대형감사법인 더미변수,

IFRS: K-IFRS 의무적용 연도(2011년, 2012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각 셀의 위는 상관계수, 아래는 유의수준을 나타냄(양측검증),

**대각선 아래쪽은 Δ PERK 표본(n=6017), 위쪽은 PERK 표본(n=6,663)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표 3〉은 주요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제시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변수 간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PERK와 DA의 상관계수는 각각 0.071로 나타나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량적발생액과 접대비성 지출이 밀접한 양(+)의 설명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가설의 설정근거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Δ PERK는 DA와 0.068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접대비성 지출의 증감에 따라 이익관리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PERK와 SIZE, DEBT의 상관계수는 각각 -0.215, -0.13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통계량을 보임으로써 기업규모가 작을수록(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낮을수록) 경영진이 파산의 위험을 인지하여 특권적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박수진·이지환 2008). 신준용·변동현(2002)도 부채에 대한 채권자의 경영감시활동과 효율적인 정보수집이

강화되므로 정보비대칭이 완화되어 대리인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PERK와 BLOK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박수진·이지환(2008)과는 일치하나 김성환·김미나(2011)와는 대조를 보였다. PERK와 FOR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외국인투자자의 적극적 감시가 설이 지지된 것으로 보인다(박현준 등 2004; 박수진·이지환 2008). PERK와 BIG4의 상관관계 또한 유의한 음(-)으로 산출되어 대형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 의한 접대비성 지출이 통제될 여지가 있다. Δ PERK와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통계량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개별기업의 접대비성 지출이 전기 수준에 준하여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김성환·김미나 2011).

4.3 평균차이분석

<표 4> 평균차이 분석

패널 A. 접대비 수준 중위수 기준 분류							
	HIGH (n=3,331)		LOW (n=3,332)		평균차이	t통계량	p값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A	0.006	0.133	-0.003	0.114	0.009	2.962	0.003
SIZE	26.131	1.349	27.029	1.587	-0.898	-24.882	0.000
DEBT	0.408	0.199	0.471	0.202	-0.064	-12.969	0.000
BLOK	27.707	15.745	28.371	15.821	-0.664	-1.717	0.086
FOR	9.335	14.120	11.007	15.076	-1.672	-4.671	0.000
BIG4	0.661	0.473	0.722	0.448	-0.060	-5.351	0.000
IFRS	0.280	0.450	0.457	0.457	-0.016	-1.397	0.163

패널 B. 접대비 증감기준 분류							
	UP (n=2,714)		DOWN (n=3,303)		평균차이	t통계량	p값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A	0.010	0.126	0.002	0.120	0.008	2.506	0.012
SIZE	26.338	1.363	26.482	1.451	-0.144	-3.972	0.000
DEBT	0.430	0.206	0.447	0.197	-0.017	-3.208	0.001
BLOK	27.631	15.600	28.299	15.920	-0.668	-1.638	0.101
FOR	8.825	13.670	9.580	13.990	-0.755	-2.108	0.035
BIG4	0.654	0.476	0.682	0.466	-0.028	-2.326	0.020
IFRS	0.36	0.479	0.35	0.476	-0.010	0.799	0.424

<변수의 정의>

DA: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추정 한 재량적발생액,

PERK: (접대비+복리후생비)/매출액, Δ PERK: 당기 PERK-전기 PERK,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총부채/자기자본, BLOK: 대주주지분율,
 FOR: 기말 외국인지분율, BIG4: 대형감사법인 더미변수,
 IFRS: K-IFRS 의무적용 연도(2011년, 2012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표 4>의 패널 A는 매출액 대비 접대비성 지출(PERK)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HIGH와 LOW로, 패널 B는 접대비성 지출의 증감을 기준으로 UP와 DOWN으로 집단 구분하여 각 변수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패널 A에서 HIGH와 LOW의 DA 평균은 각각 0.006, -0.003으로 접대비성 지출이 중위수 이상인 집단의 재량적발생액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t통계량이 2.96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패널 B에서도 UP의 DA 평균이 LOW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접대비성 지출 비중이 크거나 전기 대비 접대비가 증가한 집단에서 이익의 상향조정 정도가 더 강하게 구사되었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에서는 SIZE와 DEBT는 HIGH와 UP에서 1% 수준에서 더 낮은 평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 대비 접대비성 지출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작용하며(최수미 2007), 부채비율이 낮을(높을) 경우에 접대비성 지출비중이 크거나 증가(감소)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신준용·변동현 2002). FOR과 BIG 또한 HIGH와 UP 집단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접대비성 지출이 크거나 접대비성 지출이 증가한 집단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접대비성 지출을 호의적으로 인식하지는 않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4.4 다중회귀분석

상관분석과 평균차이분석 결과 연구가설에 대한 타당성은 지지되었지만, 이들은 인과의 방향성과 통제변수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는 단변량분석 결과로써의 한계성이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이익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DEBT), 대주주지분율(BLOK), 외국인지분율(FOR), 대형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품질(BIG4), 국제회계기준의 의무도입 연도(IFRS) 등 통제변수들을 반영하여 개별기업의 접대비성 지출이 이익조정(D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회귀분석 전반에 걸쳐 모형적합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에 대한 F값은 유의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로 측정된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¹⁰⁾

10)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측정하였다. VIF 값이 10이상 이면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DA					
	주 검증변수: PERK			주 검증변수: Δ PERK		
	계수	t통계량	p값	계수	t통계량	p값
PERK	0.053	4.230	0.000			
Δ PERK				0.069	5.402	0.000
SIZE	-0.034	-2.192	0.028	-0.036	-2.342	0.028
DEBT	-0.044	-3.459	0.001	-0.042	-3.121	0.001
BLOK	0.005	0.399	0.690	-0.001	-0.047	0.690
FOR	-0.034	-2.365	0.018	-0.018	-1.264	0.038
BIG4	-0.013	-1.052	0.293	-0.006	-0.409	0.345
IFRS	-0.041	-3.291	0.001	-0.042	-3.246	0.001
수정R ² (F값)	0.034(39.262, p<0.000)			0.027(24.806, p<0.000)		

<변수의 정의>

DA: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추정한 재량적발생액,

PERK: (접대비+복리후생비)/매출액, Δ PERK: 당기 PERK-전기 PERK,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총부채/자기자본, BLOK: 대주주지분율,

FOR: 기말 외국인지분율, BIG4: 대형감사법인 더미변수,

IFRS: K-IFRS 의무적용 연도(2011년, 2012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표 5>의 패널 A에서 주된 검증변수인 PERK의 회귀계수는 DA에 0.053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t통계량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이는 특권적 소비로 대표되는 접대비성 지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익의 상향조정을 위한 회계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Δ PERK 또한 종속변수에 각각 0.069의 회귀계수로 반영되어 1% 유의수준에서 접대비성 지출이 증가할 때 이익의 상향조정이 구사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BLOK와 BIG4를 제외하고 종속변수인 재량적발생액에 1%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설명관계로 반영되었다.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외국인지분참여 비중이 강할수록,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이후에 이익의 상향조정이 통제 혹은 완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접대비성 지출로 측정한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와 이익관리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이전에, 이들의 설명관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회계보고 관행을 시의적으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바, 이하 회귀분석에서도 다중공선성은 해석에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으므로 표에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였다. 또한 이하 회귀분석에서 추정 회귀계수는 표준화 계수를 나타내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설명력의 정도를 제시하였으며, 상수는 가설검증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표시하지 않았다.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독선적 폐단이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는바, 전형적으로 기업경영을 총괄하는 내부자가 정보독점, 정보은폐, 완전공시 불이행 등 정보를 차단하고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하여 사소한 접대비성 지출에 의한 부당이득의 편취 등까지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특권적 소비가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에서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장치는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에 대한 공시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회계보고의 투명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하성·박경서 2001; 이경목·이지환 2003; 홍서희·김명서 2013). 즉 접대비성 지출로 대표되는 특권적 소비는 투자자 보호장치, 내부통제제도, 재무공시 체계의 취약성과 비례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영업성과와 회계보고 관행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LaPorta et al. 1999; Claessens et al. 2000; Lins 2003; Leuz et al. 2003; Chan et al. 2015).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성 지출과 이익관리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5 추가분석

〈표 6〉 접대비실명제 기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DA = \beta_0 + \beta_1 PERK(\text{or } \Delta PERK) + \beta_2 SIZE + \beta_3 DEBT + \beta_4 BLOK + \beta_5 FOR + \beta_6 BIG4 + \beta_7 IFRS + \beta_8 YD + \beta_9 (YD \times PERK) + \epsilon$						
독립변수	종속변수 DA					
	주 검증변수: PERK			주 검증변수: $\Delta PERK$		
	계수	t통계량	p값	계수	t통계량	p값
PERK	0.113	7.115	0.000			
$\Delta PERK$				0.018	1.161	0.245
SIZE	0.029	1.860	0.063	-0.003	-0.227	0.821
DEBT	0.084	6.625	0.000	-0.058	-4.509	0.000
BLOK	-0.023	-1.911	0.056	0.016	1.314	0.189
FOR	-0.115	-8.083	0.000	-0.026	-1.830	0.067
BIG4	-0.014	-1.037	0.300	0.006	0.430	0.667
IFRS	-0.030	-2.047	0.041	-0.044	-2.575	0.010
YD	-0.010	-0.621	0.535	-0.010	-0.552	0.581
$YD \times PERK$	0.011	0.624	0.533	0.005	0.324	0.746
수정R ² (F값)	0.035(26.787, p<0.000)			0.024(21.214, p<0.000)		

〈변수의 정의〉

DA: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추정된 재량적발생액,

PERK: (접대비+복리후생비)/매출액, Δ PERK: 당기 PERK-전기 PERK,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총부채/자기자본, BLOK: 대주주지분율,
 FOR: 기말 외국인지분율, BIG4: 대형감사법인 더미변수,
 IFRS: K-IFRS 의무적용 연도(2011년, 2012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YD: 접대비실명제가 실시된 2004년 ~ 2008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접대비실명제¹¹⁾가 실시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접대비성 지출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바, <표 6>에서 $YD \times PERK$ 가 주된 검증변수이다. 이에 대한 회귀계수는 0.011, t통계량은 0.624로 종속변수인 재량적발생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접대비실명제가 운영된 기간의 접대비성 지출이 이익의 상향조정을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접대비실명제가 폐지된 이후 증가된 접대비성 지출로 인하여 기업의 이익조정 정도가 더 강하게 구사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며, 접대비실명제 운영기간 동안 접대비성 지출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최수미(2004)와 손원익(2013)과 유사한 결과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접대비실명제에 의한 접대비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접대비성 지출과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기업경쟁력 등을 회계투명성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6 민감도분석

본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주 설명변수인 PERK에서 복리후생비를 제거한 접대비와 접대비의 변동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적발생액에 미치는 회귀계수(t통계량)는 각각 0.073(6.133, $p < 0.000$), 0.052(4.403, $p < 0.000$)으로 나타났다. 둘째, Kothari et al.(2005) 모형으로 성과를 반영한 재량적발생액을 추정하여 접대비와 접대비 변동이 반영되는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각각 0.118(9.461, $p < 0.000$), 0.075(7.105, $p < 0.000$)로 나타났으며, 다만 통제변수에서의 부호, 기울기, 통계적 유의수준은 다소 달리 나타났다.

요컨대, 이들 결과는 본 분석결과와 거의 일관되게 산출되었으며, 이는 접대비성 지출 및 그 증가가 이익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접대비실명제란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4.7 연구결과의 시의적 함의

본 연구 결과는 접대비성 지출이 재무보고와 관련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수준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 경영자가 사적으로 소비(또는 낭비)하는 특권적, 기회주의적 지출을 계상하는 회계계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경영자가 음성적이고 비합법적으로 조성한 리베이트 및 커미션 자금, 비자금 등이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최원욱 등 2005; 손원익 2013). 국민권익위원회(2011)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비자금 조성은 매입가격 과대계상 후 그 차액의 환불, 기업에 귀속될 수익의 누락 및 횡령, 법인 명의의 차입자금 유용과 장부 기록 누락, 가공 종업원을 통한 가공비용의 계상, 횡령한 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한 가공 대여금 계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의 사용내역은 주로 최고경영자의 개인적 횡령 및 채무변제, 로비자금, 접대비 등으로 밝혀지지만, 이중 회계계정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접대비에 불과하다. 심지어 회계부정을 다루는 소송의 근거로 비자금 조성내역에 대한 은닉내용은 없으나, 사용내역에는 대부분 접대비가 기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주의적으로 은닉되어 유출된 기업자원의 일부가 접대비 계정으로 대체되어 다른 사적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재무정보로 보고된 접대비의 비중은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노출되지 않는 기회주의적 재무보고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접대비성 지출이 회계선택을 통한 이익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전문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매년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CPI는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하여 2013년 46위에 비해 3단계 상승하였으나,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2013년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해서 각각 60개국 중 58위, 148개국 중 91위로 발표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정보 신뢰성을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 감독기관의 감리제도 강화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혁 노력과 대조된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회계감사 인프라(인력, 시간)의 부족과 회계감사인인 과실 이전에, 부실회계를 은폐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더 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²⁾.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비단 특정한 요건의 흠결이나 단기간의 성과에서만 비롯된 것

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인식의 반영으로 보이며,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탐지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박중훈(2010)은 접대와 관련된 문화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로 접대성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접대비 손금인정 범위를 낮추고, 접대관련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접대활동 자체를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접대비실명제가 재차 도입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V. 연구 결론 및 한계점

접대비성 지출은 대표적인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행태로 인식되고, 이익관리는 학문적으로 회계투명성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접대비의 과다지출에 대한 시사적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접대비성 지출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설명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익관리의 대용변수는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추정된 재량적발생액을 활용하였으며, 접대비성 지출은 선행연구의 대리비용 차원에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지출의 합산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 코스피(KOSPI)에 등록된 상장법인이다.

분석결과, 재량적발생액과 접대비성 지출 및 접대비성 지출의 증감은 밀접한 양(+)의 설명관계로 나타나 특권적 소비로 대표되는 접대비성 지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기 대비 접대비 증가정도가 강할수록 이익의 상향조정을 위한 회계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를 반영한 재량적발생액(Kothari et al. 2005), 복리후생비를 배제한 접대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해석의 강건성을 기할 수 있었다. 추가분석에서, 접대비실명제가 시행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접대비성 지출에 대한 이익관리 정도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접대비실명제가 폐지된 이후 증가된 접대비성 지출로 인하여 기업의 이익조정 정도가 더 강하게 구사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였다.

회계투명성 차원에서 접대비를 연계하여 실증분석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선행연구에서 접대비성 지출로 대표되는 특권적 소비행태가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장치의 미비, 내부자에 의한 정보독점과 차단, 재무보고에 대한 공시체계 미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되는바, 본 연구결과는 접대비성 지출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관리를

12) Business Post 2014.05.30. 기사 참조. “세계 꼴찌, 부끄러운 한국의 회계투명성”

직접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접대비 관련비용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수준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령·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익조정의 대응변수 추정과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를 접대비성 지출로만 측정한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실질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 대응변수를 추정하여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을 것이며,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행태에 임원보험료, 초과 보너스 등 성과연동 보상을 확장한 연구도 수행되길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고윤성, 이진환. 2011. 접대비지출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101-132.
- 국민권익위원회. 2011. 회계부정 등으로 조성·은닉된 불법자금 근절방안.
- 김문태, 박길영. 2009.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가 경영자의 사적소비와 자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제27권 제2호):, 2009, pp.211-235.
- 김병호. 2002.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및 수익률에 대한 연구: 임원 지분율을 중심으로. 증권학회지(제30집): 391-434.
- 김성환, 김미나. 2011. 기부금과 접대비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제40권 제3호): 659-685.
- 김성환, 김태동. 2013. 감사인 규모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제18권 제2호): 95-116.
- 박수진, 이지환. 2008. 간접보상을 통한 경영자의 사익추구 : 대주주 지배력과 경영진 규율 장치의 영향. 전략경영연구(제11권 제1호): 65-88.
- 박종일. 200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제28권 제2호): 135-172.
- 박종일. 2008. 기업지배구조가 접대비 및 접대비 한도초과지출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연구(제47호): 141-180.
- 박중훈. 2010. 한국 사회의 부패 친화적인 접대문화 개선방안. 공정한 사회,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반부패 심포지엄, 국민권익위원회, 2010.
- 박현준, 신현한, 최완수. 2004. 한국기업의 대리인비용과 기업가치: 외국인 지분의 역할. 경영학연구(제33권 제2호): 655-682.
- 반혜정, 박경원. 2012.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제17권 제4호): 201-224.
- 손원익. 2002.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재정포럼(제78호): 6-19.
- 손원익. 2003.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서울.
- 손원익. 2013.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재정포럼(제202호): 21-41.
- 신준용, 변동헌. 2002. 기업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제11권 제3호): 67-85.
- 안종석, 조찬래. 2006.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오기수. 2002. 접대비 손금한도액 증감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19권 제1호): 157-184.
- 이경묵, 이지환. 2003. 한국의 지배구조. 노사관계연구(제14권): 57-98.
- 이태호, 홍정화, 박성배. 2005. 기업 접대비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제23권 제

- 2호): 25-50.
- 장상록, 김강호. 2010. 기업특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제25권 제4호): 215-242.
- 장하성, 박경서. 2001. 코스닥 등록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증권학회 심포지움.
- 조성빈. 2006. 한국기업의 대리인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 최성규, 김경민. 2005. 부채비율과 경영자의 이익조절. 회계학연구(제30권 제3호): 113-145.
- 최수미. 2003. 접대비 지출과 기업의 수익성. LG주간경제(제719호): 4-8.
- 최수미. 2004. 접대비 실명제 시행이후 기업의 변화. 회계논집(제5권 제2호): 27-51.
- 최수미. 2007. 접대비 지출실태 및 접대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비교. 회계연구(제12권 제1호): 259-279.
- 최승호, 최우중. 2010. 내부통제 중요 취약점이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후 4년을 중심으로. 회계저널(제19권 제3호): 31-53.
- 최원욱, 김갑순, 이영한. 2005.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지출액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22권 제4호): 87-121.
- 홍수희, 김명서. 2013. 상장기업 특수관계자 공시 제도 및 현황. CGS보고서(제66권 제3호): 37-56.
- Chan, C. Y., H. Tsai and K. A. Li. 2015. Why do executives commit financial fraud? Executive perquisites and corporate governance implications. working paper.
- Claessens, S., S. Djankov and L. Larry. 2000.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1): 81-112.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 Gopalan, R. and S. Jayaraman. 2012. Private control benefits and earnings management: evidence from insider controlled firm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0(1): 117-157.
- Jensen, M. C. and K. J. Murphy. 1990. Performance pay and top-management incentiv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2): 225-264.
- Kothari, S., A. Leone and C.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163-197.
- La Porta, Rafael,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1999.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The journal of finance* 54(2): 471-517.
- Leuz, C., D. Nanda and P. D. Wysocki.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9(3): 505-527.
- Lins, K. V. 2003. Equity ownership and firm value in emerging markets. *Journal of*

-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38(1): 159-184.
- Morck, R. and M. Nakamura. 1999. Banks and corporate control in Japan. *The Journal of Finance* 54(1): 319-339.
- Reese, W. A and M. S. Weisbach. 2002.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 interests, cross-listings in the United States, and subsequent equity offer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6(1): 65-104.
- Shleifer, A. and R. W. Vishny. 1997. A survey of corporate governance. *The journal of finance* 52(2): 737-783.
- Yafeh, Y. and O. Yosha. 2003. Large Shareholders and Banks: Who monitors and How?. *The Economic Journal* 113(484): 128-146.
- Zingales, L. 1994. The value of the voting right: A study of the Milan stock exchange experienc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7(1): 125-148.

The Effect of Entertainment Cost on Earnings Management

Wee June-Bok* · Kim Moon-tae** · Lee Sun-hwa***

—〈Abstract〉—

In Korea, entertainment cost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fundamental concept, the tax benefits and advantage, and social perceptions that distinguish it from the other countries and negative perceptions and debates have been emerged continually.

Entertainment costs as the measure of perquisites consumptions are exposed in the countries or firms which are in the lack of investors protection and adequate internal controlled system and conceal financial disclosure. On a crucial point, these are inseparably related the earnings management, and thus it may be interesting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entertainment cost and earnings management directly. Moreover, managers who inte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outsiders detecting their perquisites consumptions may have incentives to manage reported earnings to make up for low firm performanc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entertainment costs as measure of perquisites consumption are associated with earnings management. Considering from an agency theory, managers' perquisites consumptions are measured as the sum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and employee benefits(PERK). Earnings management is proxied by discretionary accruals(DA) estimated using the version of modified Jones(Dechow et al. 1995). The test sample consists of 6,663 firm-year data, selected from the KOSPI listed companies of the fiscal year during 2004-2014.

The results are described as a positive relationship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entertainment costs and the same in the case of change of entertainment costs. Also as entertainment costs in the portion of sales and the change of entertainment costs are increased, earnings management to overstate earnings is increased. The same results are obtained in analysis by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by Kothari(2005) and entertainment costs excluding employee benefits. In additional analysis, the analysis for the period of enforcing a real-name entertainment costs system from 2004 to 2008 do not show the significant result. It disprove indirectly that earnings management due to the increased entertainment costs after abolishing the upper limit on corporate entertainment expenses.

The previous studies often mention that perquisites consumption represented by entertainment costs could be related with lack of investor protection and internal control system, information asymmetry and by insiders monopolies, and lack of disclosure system.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tertainment costs and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am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am National University

opportunistic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to present entertainment costs as the empirical basis to make a guess moral hazard of management and to establish the laws and institutions for transparently handling entertainment costs.

Keywords: Entertainment Costs, Perquisites Consumptions,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Upper limit on Entertainment expenses.